참 고 주요 질의사항

Q. 1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업종구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. 1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.

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업종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.

※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[예: 컴퓨터 프로그래머(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), 전기·가스검침원 등]인 경우 기타자영업 코드(940909) 입력

Q. 2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중 언제를 기준으로 개정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1,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하나요?

A. 2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
(원천징수 세액 계산사례)

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甲이 퀵서비스기사 A에게 건당 3만원인 배달 2건, 건당 6만원인 배달 3건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, 원천징수 세액은?

(종전) 0원[1]×2건 + 1,800원[3]×3건 = 5,400원 **(개정)** 900원[2]×2건 + 1,800원[3]×3건 = **7,200원**

1) 30,000×3%=900원 → 원천징수세액 1,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제외
2) 이번 세법 개정으로 1,000원 미만이더라도 **원천징수**(소액부징수 적용 제외)
3) 60,000×3%=1,800원

Q. 3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과 같이 소액부징수를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. 3 과소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*를 부과합니다.

또한,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개정 세법사항에 맞춰 정확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미납세액 × 3% + (과소·무납부세액 × 22/100,000 × 경과일수) ≦ 미납세액 × 50%
(단,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≦ 10%)